



#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http://www.namwon.go.kr)

제52호 2022. 7. 20(수)

<b>선 람</b>	기관의 장

## 규 칙

- 남원시 자치법규 공포 목록(규칙 3건)----- 1
- 남원시 규칙 제713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
- 남원시 규칙 제714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 남원시 규칙 제715호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9

## 훈 령

- 남원시 자치법규 공포 목록(훈령 1건)-----29
- 남원시 훈령 제431호 남원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30

##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2-1570호 공시송달공고-----37
- 남원시 공고 제2022-1575호 도로지정공고-----49

회 람										
--------	--	--	--	--	--	--	--	--	--	--

# 남원시 자치법규 공포 목록

-(규칙 3) -

□ 규칙 : 3건

공포 번호	규칙명	제·개 정 내 용	소관 부서
713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총괄) 개정 (안 별표 1)  1) 총 계 : 1,165명 ⇒ 1,167명(증2) 2) 본 청 : 561명 ⇒ 563명(증2) 3) 의회사무국 : 30명 ⇒ 30명 4) 직속기관 : 171명 ⇒ 171명 5) 읍 : 18명 ⇒ 18명 6) 면 : 213명 ⇒ 213명 7) 동 : 102명 ⇒ 102명	행정 지원과
714	남원시 행정기구 설 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 준수사항 사무분장 규정(안 별표1)	행정 지원과
715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 성격이 다른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기 위 하여 용어 및 관련 서식 변경  가. 시효완성정리 용어 변경 (안 제12조) - (기존)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의 결손처리’ - (변경) : ‘시효완성정리’  나. 정리보류 용어 변경 (안 제13조~제15조) - (당초) : ‘결손처분’ → (변경) : ‘정리보류	재정과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20일

남원시 규칙 제 713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lt;개정 2022.7.20.&gt;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총괄)

총괄									
직급	직렬	총계	본심	의 의 시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1167(11)	563(3)	30	171	70	18	213(5)	102(3)
정무직계		1	1						
시 정		1	1						
일반직계		1117(11)	558(3)	30	127	69	18	213(5)	102(3)
4급	소 계	6	4	1	1				
	행정	1	1						
	기술	1			1				
	행정기술	4	3	1					
5급	소 계	57	26	2	3	3	1	15	7
	행정사회	2	2						
	행정시설	6	6						
	행정-사회-보건	1	1						
	행정-사회-환경	1		1					
	행정-사회-농업								
	행정통신	1	1						
	행정-공업-농업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2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10	8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행정-보건-시설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행정-사회-농업-녹지	1						1	
	행정-사회-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농업-시설	7						4	3
	행정-사회-보건-시설	1							1
	행정-사회-보건-환경	3						1	2
	행정-공업-농업-보건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환경-농업-시설	2						2	
	행정-농업-녹지-환경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5					1	4	
	행정-농업-녹지-보건	1						1	
	행정-보건-의기관호	2				2			
	행정-보건-의무기관호	1			1				

직급	직렬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6급	소 계	242	128	5	13	14	5	61	16
	행 정	24	19	4		1			
	공 업								
	시 설	7	6			1			
	보건진료	3			3				
	전기운영								
	기계운영	1				1			
	운전	8	8						
	위생	1	1						
	시설관리	1	1						
	사무운영								
	행정세무	6	5						1
	행정-사회복지	21	7					5	9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16	9					5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3	1			1		1	
	행정-시설	18	16			2			
	행정-통신	1	1						
	농업-수의	1	1						
	농업-농지	2	2						
	농업-환경	2	2						
	환경-시설	1				1			
	농지-시설	1	1						
	보건-간호	1			1				
	공업-환경	1	1						
	보건-약무								
	행정-세무-농업	13						11	2
	행정-사회-보건	3	3						
	행정-사회-농업	4	1					3	
	행정-사회-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통신	3	3						
	행정-공업-환경	3	2			1			
	행정-공업-시설	9	6			2	1		
	행정-농업-시설	17	9	1				7	
	행정-농업-농지	11	3				1	7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통신								
	행정-농지-시설	2	2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병세안전	2	2						
	행정-시설-방송통신								
	공업-환경-시설	1				1			
	농지-환경-시설	2	2						
	보건-간호-의료기술	5			5				
	행정-전산-사회-시설	1					1		
	행정-사회-농업-세무	5						3	2
	행정-사회-농업-의기								
	행정-세무-농업-환경	3						3	
	행정-사회-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농업-시설	4						4	
	행정-사회-보건-간호	3	1					2	
	행정-사회-보건-의기	9						9	
	행정-전산-세무-농업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4	4						
	행정-농업-보건-간호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환경	1			1				
	행정-시설-방송-통신-사무-운영	3				3			
	보건-의기-약무-간호	1			1				

직급	직렬	총계	본청	의 의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7급	소 계	302(2)	161(1)	13	35	18	6	46	23(1)
	행 정	61(2)	39(1)	5		1		13	3(1)
	진 산	3	3						
	사회복지	21	6				1	6	8
	공 업	15	7		1	7			
	농 업	6	6						
	녹 지	2	2						
	보 건	6			6				
	의료기술	1			1				
	간 호	6			6				
	보건진료	6			6				
	환 경	1	1						
	시 설	26	21			5			
	방송통신	1	1						
	운전	8	7	1					
	통신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3	2			1			
	행정세무	12	5					5	2
	행정-사회복지	11	10				1		
	행정진산	4	3					1	
	행정시서	2	2						
	행정속기	1		1					
	행정공업	4	3			1			
	행정농업	28	4				2	17	5
	행정보건	1							1
	행정-식품위생								
	행정시설	25	19				1	1	4
	사회보건	1	1						
	공업환경	2				2			
	공업통신								
	농업수의	4	4						
	농업-해양수산	1	1						
	녹지-해양수산	1	1						
	보건환경	1	1						
	보건간호	4			4				
	간호-보건진료	2			2				
	행정-진산-시설	1	1						
	행정-진산-통신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시설	6	1	5					
	행정-녹지-통신	1					1		
	행정-보건-환경	4	1		3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공업-해양수산	2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2	2						
	보건-간호-의료기술	5			5				

직급	직렬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8급	소 계	325(2)	156(1)	5	60	19	3	51	31(1)
	행정 세무	46(2)	32(1)	3		2		4	5(1)
	사회복지	3	3						
	진산	16	9					5	2
	공업	1	1						
	농업	15	5		1	9			
	복지	6	6						
	복지	3	2			1			
	보건	6			6				
	의료기술	10			10				
	간호	28			5		1	15	7
	보건진료	14			14				
	환경	4	2			2			
	시설	19	17		1	1			
	위생								
	시설관리								
	운전	5	4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3	3						
	열관리운영								
	행정세무	8	3					2	3
	행정진산	3	2	1					
	행정-사회복지	17	2				1	8	6
	행정-시서								
	행정속기	1		1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10	4				1	3	2
	행정복지	6	4			1		1	
	행정보건	3	2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38	24			1		7	6
	행정-방재안전	2	2						
	세무-진산	1	1						
	세무-환경	1	1						
	진산-통신	2	2						
	공업-환경	2	2						
	공업-농업								
	농업-복지	2	1					1	
	공업-해양수산	1			1				
	공업-운전	4	4						
	복지-환경	1	1						
	복지-시설	1	1						
	보건-간호	12			12				
	간호-보건진료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 진산,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복지	2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복지-시설	2						2	
	행정-공업-환경	2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 시설, 방재안전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3			3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공업-시설-방재안전	1	1						
	보건-간호-환경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5			5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직급	직렬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9급	소 계	185(7)	83(1)	4	15	15	3	40(5)	25(1)	
	행정	42	24	3		1	1	10	3	
	세무	2	1						1	
	진산	1	1							
	사회복지	28	4				1	11	12	
	공업	10	4		3	3				
	농업	4	3					1		
	녹지	1	1							
	해양수산									
	보건	3			3					
	환경	1					1			
	시설	6	5				1			
	시설관리	1					1			
	운전	12	6	1	3	2				
	집기운영	2			1				1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농림운영									
	사무운영	3					2		1	
	통신운영.사무운영									
	진화상담운영.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4	2						1	1
	행정진산	2	2							
	행정사회	17(7)	5(1)				1		9(5)	2(1)
	행정서서	4	4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3	2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									
	행정시설	19	14						5	
	행정속기									
	농업녹지	1	1							
보건-의료기술	2				2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환경	3	2			1					
행정-사회-세무	4								4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녹지-시설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세무-공업-환경	1							1		
전문경력직										
니군	소 계									
	농기계교육교관									
별정직계		1	1							
6급상당	소 계	1	1							
	비서	1	1							
연구직계		4	3			1				
연구사	소 계	4	3			1				
	학예연구	3	2			1				
	기록연구	1	1							
지도직계		44			44					
지도관	소 계	3			3					
	농촌지도	3			3					
지도사		41			41					
	농촌지도	41			41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20일

남원시 규칙 제 714 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안전재난과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5.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대응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20일

남원시 규칙 제 715 호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정리보류 등)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에 따른다.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4조의 제목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를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 을”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을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으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생략)</p> <p>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u>결손처리</u>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p> <p>③ (생략)</p>	<p>제12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시효완성정리</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u>결손처분</u>) 법 제106조에 따른 <u>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u></p>	<p>제13조(<u>정리보류 등</u>)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u>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에 따른다.</u></p> <p>② <u>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u></p>
<p>제14조(<u>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u>) 해당연도에서 <u>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u></p>	<p>제14조(<u>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u>) ----- ----- <u>정리보류</u> ----- ----- <u>정리보류</u> <u>취소액</u>----- -----</p>

현 행	개 정 안
<p>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록하여야 한다.</p> <p>제15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u>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u></p>	<p>----- -----.</p> <p>제15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u>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u> ----- ----- -- <u>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u> ----- <u>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u></p>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4조 관련)

(앞 쪽)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5px;">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정리보류  <input type="checkbox"/> 시효완성정리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left: 10px;">]</div> </div>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 통지 제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항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목	세액	계		
		가산세			
		결정액			
결정세액		₩ (금 원)			
납세인원		시 변경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5조 관련)

##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납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주소	부과금액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m<sup>2</sup>)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9조 관련)

(앞 쪽)

<b>지방세 체납액정리표</b>												
과세물건					전화번호							
상 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남/여)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b>약도</b>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인)
<b>주거 확인</b>			<b>재산 확인</b>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b>생활상대 확인</b>			<b>재조사 확인</b>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 훈령 : 1건

공포 번호	규칙명	제·개정 내용	소관 부서
431	남원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청원심의회 원칙 및 구성 규정 (안 제4조~제5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안 제6조) 라. 청원심의회 기능, 개최, 운영사항 규정 (안 제7조~제9조) 마. 비밀 준수 의무, 의견청취, 수당 등 규정 (안 제10조~제12조)	감사실

남원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7월 20일

남원시 훈령 제 431 호

남원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남원시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사항”이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청원서 접수, 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남원시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직속 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법령에 따라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청원심의회 원칙)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외부위원은 시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내부위원은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감사실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청원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청원심의회는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청원심의회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청원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청원심의회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청원심의회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원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가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 회의는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담당부서			제출일자	
청원인	성명		생년월일	
청원요지				
개최이유				
요청시기				
검토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별지 제2호서식]

###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건	
일시	. . .
검 토 의 견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b>안 건</b>	
<b>일 시</b>	. . .
<b>심 의 결 과</b>	

### < 남원시 청원심의회 위원 >

구 분	성 명	심 의 의 견			서 명
		찬성 <small>(심의결과 동의)</small>	반대 <small>(심의결과 반대)</small>	비고	
위원장					
위원					

남원시 공고 제2022 - 15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7. 21. ~ 2022. 8. 5. (15일간)
2. 공고장소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2.7.18.)	양○완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155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155	주1 블록 주택 45㎡

##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18.

남 원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공고 제 2022 - 1575호

##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m <sup>2</sup>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m <sup>2</sup> )	토지소유자
2022-2 7	남원시 운봉읍 신기리 197(전)	김*효	2022-건축과- 신축신고-160	100	4	80	197	80	김*효